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,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화장품관리협회의 협의·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의4 신설).
- 화장품 안전 관리,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회를 둠(안 제2조의5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회와 관련하여,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¹⁾

-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.

개정안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의견
제2조의5(화장품관리협의회) ①~ ⑤ (생략) <신설> ⑥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2조의5(화장품관리협의회) ①~ ⑤ (개정안과 같음) <u>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그 외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혜진)

- 1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「정부조직법」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